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개정사항

(2010.05)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부분개정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 05 개정]

page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07	개정(안), 2010	비고
	2.7 구 조	2.7 구 조	
23	[설 명] (중략) 연석의 높이는 배수, 자동차의 보도 전입 억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구간에는 수직형 연석을 설치하고,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경사형연석을 설치한다. 수직형의 높이는 150—250mm로 하고 표준 높이는 150mm로 한다. 교량 및 터널 등에서 시설 구조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250mm까지 높일 수 있으나, 운전자 비상시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높이는 200m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석의 높이는 자동차의 보도 전입 억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지방부 도로에는 100mm 정도의 경사형 연석으로 차도와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연석의 차도쪽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자동차 타이어의 파손을 예방한다. <그림 2.14> 는 수직형과 경사형 연석의 형식 사례를 보인 것이다. 150 R=10 R=10 R=10 A → 28 G → 28 G → 38 B → 3 → 28 G → 38 G → 48 C 단위: mm) - 28 G → 48 C 단위: mm) - 28 G → 48 C 단위: mm) - 28 C → 48 C 단위: mm) - 28 C → 48 C 단위: mm) - 28 C → 48 C →	여 설치한다. 연석은 도시부 도로에서 보차도 분리 등 횡단구성 요소의 시설로서 거의 필	

page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07	개정(안), 2010	비고
		설치위치 / 연석종류 경사형 수직형 수직형 (완경사형) (급경사형)	
		연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 할 경우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 는 연석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 ◎	
		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 🔾	
		주1. ◎ : 일반적 적용 형식 주2. ○ : 도로여건에 따라 사용가능형식	
		축구경용 연석 (단위: mm) 연석 (단위: mm) (a) 경사형 (완경사형) (b) 수직형 I (급경사형) (c) 수직형 II (직사각형) (d) 무료 이 과 소을 예방해야 한다. 우천시 보행자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경우에 사용하는 연석의 상단 마찰력은 40BPN 이상을 가져야 한다.	